

정관

삼성중공업 

1974년	3월	11일	제정
1977년	2월	19일	개정
1977년	8월	16일	개정
1978년	2월	8일	개정
1978년	5월	15일	개정
1978년	7월	27일	개정
1978년	8월	19일	개정
1980년	2월	27일	개정
1980년	12월	31일	개정
1981년	2월	13일	개정
1982년	2월	15일	개정
1983년	1월	1일	개정
1983년	6월	15일	개정
1983년	11월	1일	개정
1985년	2월	14일	개정
1988년	2월	27일	개정
1988년	3월	25일	개정
1989년	2월	25일	개정
1990년	11월	22일	개정
1991년	7월	13일	개정
1992년	2월	27일	개정
1993년	3월	29일	개정
1993년	6월	18일	개정
1993년	9월	23일	개정
1993년	9월	24일	개정
1994년	2월	28일	개정
1995년	2월	25일	개정
1996년	2월	28일	개정
1997년	3월	14일	개정
1998년	3월	25일	개정
1999년	3월	26일	개정
2000년	3월	24일	개정
2001년	3월	5일	개정
2002년	3월	9일	개정
2005년	2월	28일	개정
2009년	3월	13일	개정
2010년	3월	19일	개정
2016년	3월	18일	개정
2016년	8월	19일	개정
2018년	1월	26일	개정
2019년	3월	22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4년	3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선박건조, 수리, 개조, 임대 및 판매업<개정 2024.3.21>
- ② 육, 해상철구조물 및 해양 PLANT제작, 판매, 설치, 수리 및 임대업
- ③ BOILER 및 원자로 제작, 판매, 설치, 수리업
- ④ 내연기관 및 TURBINE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⑤ 동력전달장치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⑥ 금속일차제품 제조기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⑦ 제2차 금속 가공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⑧ PUMP, 송풍기, 압축기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⑨ 유압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⑩ 화학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⑪ 하역운반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⑫ 광산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⑬ 각종 중기, 토크, 건설기계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업
- ⑭ PULP, 제지 지공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⑮ 공업용로 및 발열기기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⑯ 냉동기 및 공기조절장치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⑰ 포장하조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⑱ 섬유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⑲ 인쇄제본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⑳ 목공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㉑ 농업용 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㉒ 주물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㉓ 주물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㉔ 산업차량 제작, 판매 및 수리업

- ②₅ 강재, 강구조물 및 강제품의 제작, 판매 및 수리업
- ②₆ 냉, 난방설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②₇ 기타 육상기계제작, 판매 및 수리업
- ②₈ 조선용 기자재의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②₉ 목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⑩ 토목 및 건축업
- ⑪ 전기공사업
- ⑫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제작, 판매업
- ⑬ 액상폐기물 정화조설계 시공업 및 위생설비시공업
- ⑭ 분뇨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⑮ 포장공사업
- ⑯ 수출입업
- ⑰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 ⑱ 경제작물 또는 수목의 식재 및 판매업(인삼, 앵속 등 제외)
- ⑲ 생활필수품 도소매업
- ⑳ 소방설비 (공사 · 정비)업
- ㉑ 항만하역업
- ㉒ 선박급수업
- ㉓ 가스시설 시공업
- ㉔ 물품취급장비 제조, 판매 및 수리업
- ㉕ 쓰레기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 ㉖ 고무 및 프라스틱용 가공기계의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㉗ 금속공작가공기계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㉘ 산업용 로보트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㉙ 내연기관의 부분품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㉚ 벨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작, 판매, 설치 및 수리업
- ㉛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 ㉜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 ㉝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
- ㉞ 해외건설업 (일반, 특수, 전기 외)
- ㉟ 준설 공사업
- ㉟ 조경 공사업
- ㉞ 유선통신 기계공사업 및 선로공사업
- ㉞ 전기기기 및 제어기기의 제작, 판매
- ㉞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 ⑥⓪ 각종 엔진과 엔진 장착설비의 제조 및 판매
- ⑥① 각종 기계설비, 공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 ⑥② 각종 전자공업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 ⑥③ 각종 화학공업품의 제조 및 판매
- ⑥④ 자동차 정비, 수리 및 검사 대행사업
- ⑥⑤ 철도장비의 제작, 판매, 수리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 ⑥⑥ 관광 및 일반 숙박업
- ⑥⑦ 관광객 이용시설업
- ⑥⑧ 토목, 건축, 장치 및 철구조물에 관한 설계 및 감리업
- ⑥⑨ 도시재개발사업
- ⑦⓪ 문화재 보수업
- ⑦⑪ 주차장 및 그와 관련된 편의시설 운영업
- ⑦⑫ 기술 용역업
- ⑦⑬ 인터넷 사업
- ⑦⑭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 ⑦⑮ 의료용 기기 제조, 판매업
- ⑦⑯ 환경정화 및 복원업
- ⑦⑰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⑦⑱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단지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 ⑦⑲ 선박연료공급업 <신설 2024.3.21>
- ⑧⓪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2024.3.21>
- ⑧① 상기 각호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개정 2024.3.21>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에 공장,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3.18>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sh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상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개정 2021.6.22>

제 2 장 주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오억주로 한다.<개정 2021.6.22>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의 2종으로 한다.
- ② 삭제<2019.3.22>
-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 ④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배당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결정한다.
<개정 2000.3.24>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⑥ 당해 사업년도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⑦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4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개정 2000.3.24>
-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⑨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3.22]

제 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오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 다만, 제40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⑥ 본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환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3.22]

제 8 조의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육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⑥ 본 회사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3.22]

제 8 조의 4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9]

제 8 조의 5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신설 2019.3.22]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개정 2019.3.22>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0.3.24>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19.3.22>
-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3.13>

제10조 (삭 제)

제11조 (신주의 인수)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00.3.24>
-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3>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0.3.24>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 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6.22>

제11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3 (일반공모증자)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3.13>
-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3.13>

제11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개정 2000.3.24>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개정 2000.3.24>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개정 2000.3.24>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2.3.9>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2.3.9>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3.9>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삭 제) <2016.3.18>

제13조 (삭 제)

제14조 (기준일) <개정 2021.6.22>

- ① 삭제<2021.6.22>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22>

제15조 (삭 제) <2019.3.22>

제16조 (삭 제)

제 3 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2종으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00.3.24>

제17조의 2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3.13>
- ③ 삭제<2002.3.9>

제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3.18>

제19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정된 이사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0.3.24>

제20조 (의장)

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3.24>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발언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개회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3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개정 2024.3.21>

제24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25조 (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를 두며, 그 중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05.2.28>
- ② 삭제<2000.3.24>

제25조의 2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②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상법 제542조의 8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개정 2009.3.13>

제25조의 3 (삭 제)

제25조의 4 (삭 제)

제26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0.3.24>
- ②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0.3.24>
- ③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총원한다. 단,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총원을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까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3.24>
- ④ 2인 이상의 이사 선임(보선 포함)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의 임기)

① 본 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월 이내에 만료될 경우에는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0.3.24>

② 삭제<2000.3.24>

③ 삭제

제28조 (대표이사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개정 2000.3.24>

제29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 집행한다. <개정 2000.3.24>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⑤ 삭제 <2000.3.24>

제3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본 회사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0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개정 2016.3.18>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3.24]

제30조의 3 (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8, 2000.3.24>

제30조의 4 (경영위원회) <개정 2016.3.18>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 3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주요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4]

제30조의 5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4]

제30조의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 3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4]

제31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3.18>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3.24>
-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제33조의 2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4]

제34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도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4>

제35조 (삭 제)

제36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한도를 정한다.
<개정 2000.3.24>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제 ①항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0.3.24>

제37조 (고문, 대우임원)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과 대우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00.3.24>

제 5 장 계 산

제38조 (사업년도 및 결산)

- ①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의 1회로 한다.

제39조 (이익금 처분)

- ① 본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
- ③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시에는 결산기말일 현재, 중간배당시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회사에 귀속한다.
- 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41조 (업무규정의 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제42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44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말미기재와 같다.

위 삼성중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서기 1974년 3월 11일

발기인

이 병 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110번지

홍 진 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00번지

이 건 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0번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종 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번지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은 택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번지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우 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50번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영 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50번지

석천도파마중공업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시 야 진 웅
일본국동경도천대전구대수정이정목2번지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우선주에 대한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무의결권이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주식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4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 규정)

- ①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25조가 개정되어 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원의 2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27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